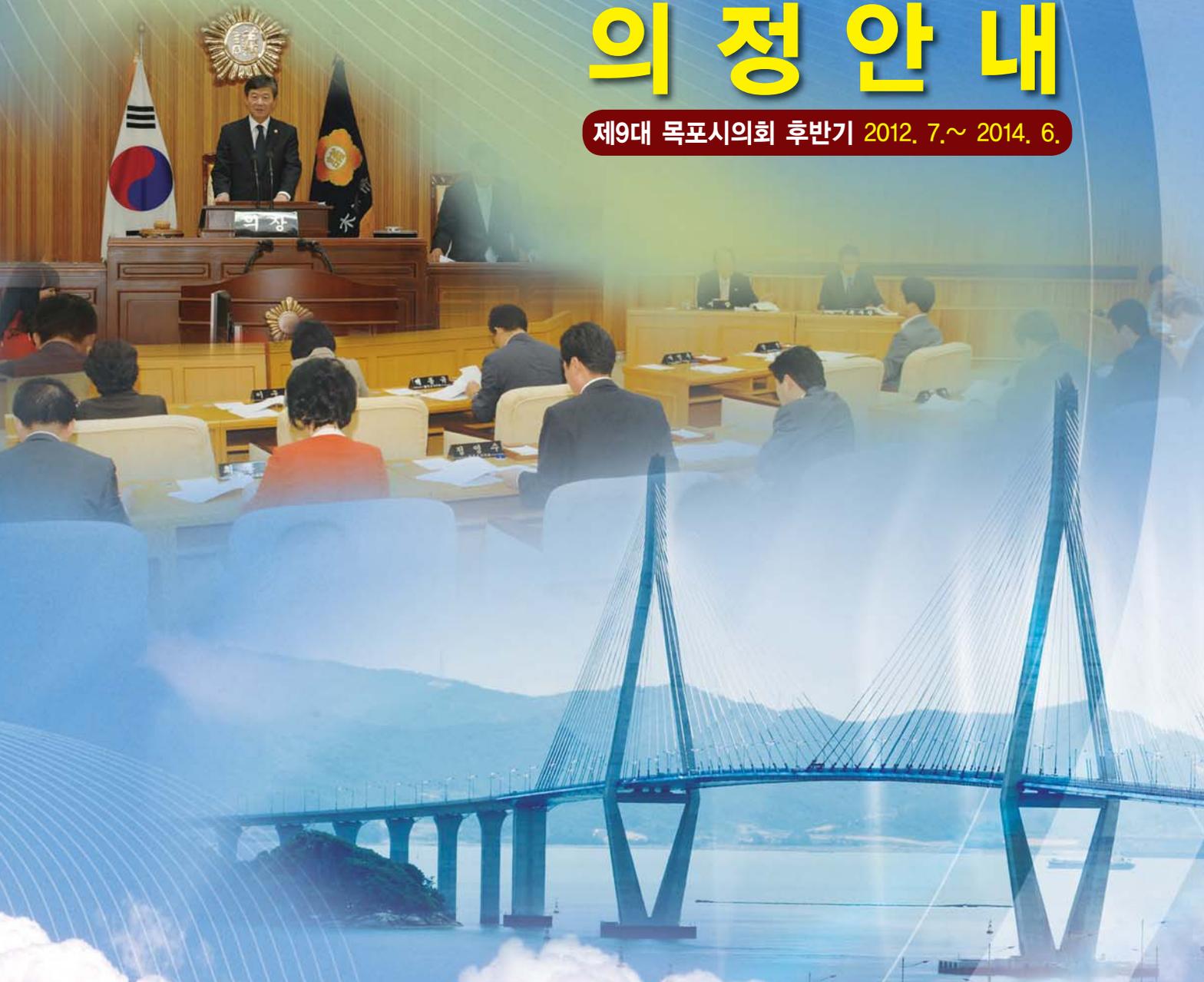


의정안내

제9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2012. 7. ~ 2014. 6.



CONTENTS

MOKPO CITY COUNCIL INFORMATION



3 의장 인사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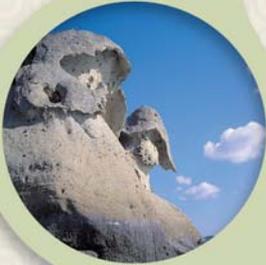
4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5 의회 연혁

6 역대 의장 · 부의장

7 의회 현황

8 의회 기구별 기능



9 의회의 기능

12 의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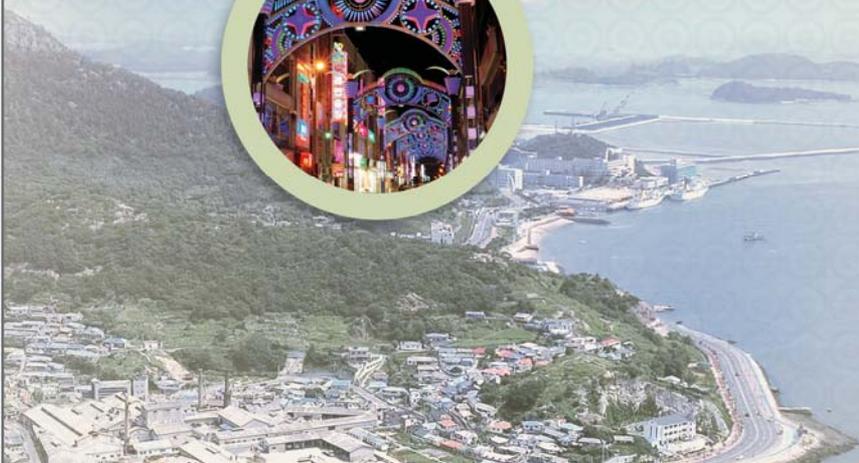
13 상임위원회별 의원 현황 및 소관

14 의원 명단

18 시정현황 - 목포시 연혁 · 19

- 목포시 상징 · 20

- 목포시 기본현황 · 22



의장 인사말씀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목포시 의회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9대 목포시의회가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본 책자를 통해 목포시의회를 소개해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후반기에도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한 차원 높은 성숙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난관을 거쳐야 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목포시의회는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제도의 오류로 인해 좌절하는 시민은 없는지,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은 없는지 늘 가까이 살피기 위해서 더 배우고 뛰며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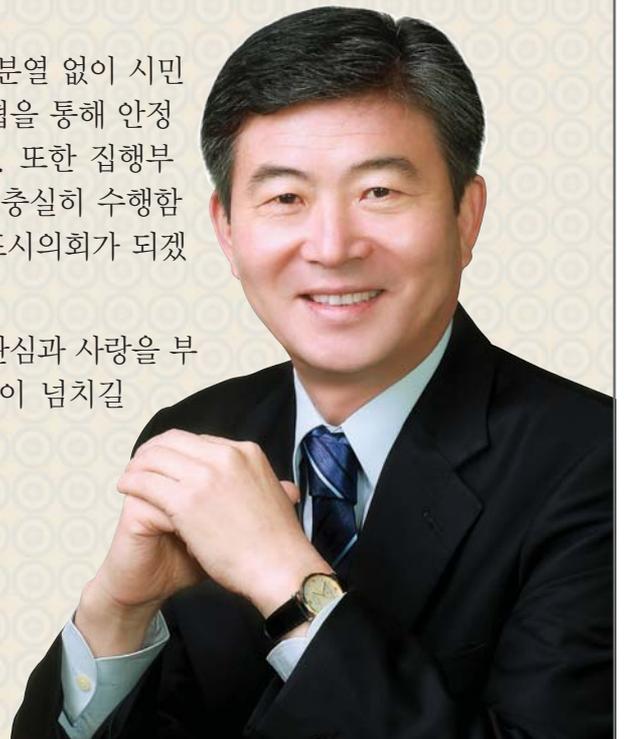
앞으로도 22명 목포시의회 의원 모두는 갈등과 분열 없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안정감 있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력과 조화로 견제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희망찬 미래를 시민과 함께 열어가는 목포시의회가 되겠습니다.

목포시의회의 활동에 시민 여러분의 더욱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7.

목포시의회 의장 **배 중 범**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MOKPO CITY COUNCIL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시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 2 |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3 |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 4 | 목포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5 |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MOKPO CITY COUNCIL

열린의회 · 열린의정

의회 연혁

1950

- 1952. 5. 5. 제1대 목포시의회 개원(의원 21명)
- 1956. 8. 30. 제2대 목포시의회 개원(의원 16명)

1960

- 1960. 12. 20. 제3대 목포시의회 개원(의원 16명)
※ 1961. 5. 20. 해산(5. 16 군사정변 포고 제4호)

1990

- 1991. 4. 15. 제4대 목포시의회 개원(의원 30명)
- 1995. 7. 10. 제5대 목포시의회 개원(의원 33명)
- 1998. 7. 8. 제6대 목포시의회 개원(의원 25명)

2000

- 2002. 7. 10. 제7대 목포시의회 개원(의원 22명)
- 2006. 7. 11. 제8대 목포시의회 개원(의원 22명)
- 2010. 7. 7. 제9대 목포시의회 개원(의원 2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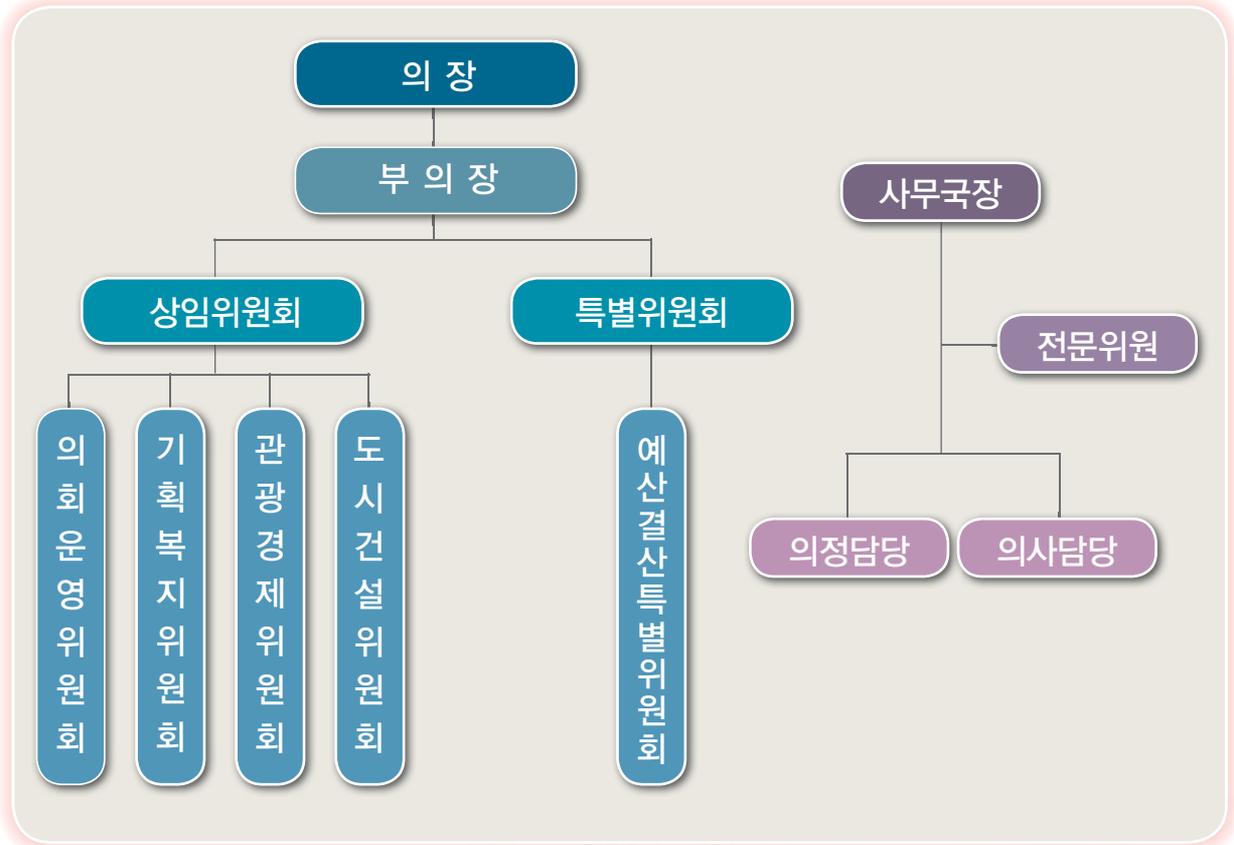
역대 의장 · 부의장



구 분	의 장		부의장	
	성 명	재 임 기 간	성 명	재 임 기 간
1대	유 정 두	'52. 5. 5 ~ '54. 7. 15	이 소 규	'52. 5. 5 ~ '54. 7. 15
	박 찬 규	'54. 7. 16 ~ '56. 8. 6	이 소 규	'54. 7. 16 ~ '56. 8. 6
2대	김 경 인	'56. 8. 30 ~ '56. 11. 4	정 응 표	'56. 8. 30 ~ '56. 11. 4
	김 삼 성	'56. 11. 5 ~ '60. 5. 17	김 영 락	'56. 11. 5 ~ '60. 5. 17
	김 경 인	'60. 5. 18 ~ '60. 12. 19	명 남 철	'60. 5. 18 ~ '60. 12. 19
3대	조 양 순	'60. 12. 20 ~ '61. 5. 20	김 상 태	'60. 12. 20 ~ '61. 5. 20
4대	김 천 옥	'91. 4. 15 ~ '93. 4. 14	이 춘 응	'91. 4. 15 ~ '93. 4. 14
	최 정 선	'93. 4. 15 ~ '95. 6. 30	박 연 호	'93. 4. 15 ~ '95. 6. 30
5대	이 광 래	'95. 7. 10 ~ '97. 1. 9	정 원 술	'95. 7. 10 ~ '95. 8. 2
	임 송 본	'97. 1. 10 ~ '98. 6. 30	임 송 본	'95. 9. 20 ~ '97. 1. 9
			김 선 호	'97. 1. 10 ~ '98. 6. 30
6대	최 기 동	'98. 7. 8 ~ '02. 6. 30 (연임)	문 창 부	'98. 7. 8 ~ '99. 5. 25
			문 오 성	'99. 6. 21 ~ '00. 7. 7
			노 상 익	'00. 7. 8 ~ '02. 6. 30
7대	김 대 중	'02. 7. 10 ~ '04. 2. 12	장 복 성	'02. 7. 10 ~ '04. 2. 12
	장 복 성	'04. 2. 13 ~ '04. 7. 9	김 탁	'04. 2. 13 ~ '04. 7. 9
	장 복 성	'04. 7. 10 ~ '06. 6. 30	김 탁	'04. 7. 10 ~ '06. 6. 30
8대	박 병 섭	'06. 7. 1 ~ '08. 1. 31	배 종 범	'04. 7. 1 ~ '08. 6. 30
	배 종 범	'08. 2. 1 ~ '08. 6. 30 (의장 직무대리)		
	장 복 성	'08. 7. 1 ~ '10. 3. 17	강 성 휘	'08. 7. 1 ~ '10. 3. 2
	노 상 익	'10. 3. 22 ~ '10. 6. 30	윤 양 덕	'10. 3. 22 ~ '10. 6. 30
9대	배 종 범	'10. 7. 1 ~ '12. 6. 30	허 정 민	'10. 7. 1 ~ '12. 6. 30
	배 종 범	'12. 7. 2 ~	허 정 민	'12. 7. 2 ~

의회 현황

의회기구



의원현황

- 의 원 수 : 22명(남 18, 여 4)
- 정 당 별 : 민주통합당 16, 무소속 6
- 연 령 별 : 30대 2, 40대 9, 50대 10, 60대 1
- 당선경력 : 초선 11, 재선 3, 2선 1, 3선 5, 4선 2

의회사무국 직원현황

구분	총원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청경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7급	8급	9급	10급		
정원	25	17	1	3	3	6	1	3	5	2	2	1	-	1	2

의회 기구별 기능

의장·부의장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합리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사무를 처리, 감독한다. 부의장은 의장 부재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의장을 제외한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이 가능하다.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이며,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본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특별위원회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한다(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의회사무국

주요기능

- 의회사무의 전담처리 및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조
-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처리

부서별 업무

부서별	업무내용
전문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의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 조사·수집·연구 • 소속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및 의정활동 지원
의정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사무국 직원의 복리후생, 인사·예산 관리 •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 등
의사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 회의록 관리, 각종 의안, 청원·진정 등 처리 총괄

의회의 기능

의결권

의결권은 자치단체 또는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이 의결권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개폐하고, 예산안과 결산안을 확정·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의회의 의결권의 범위는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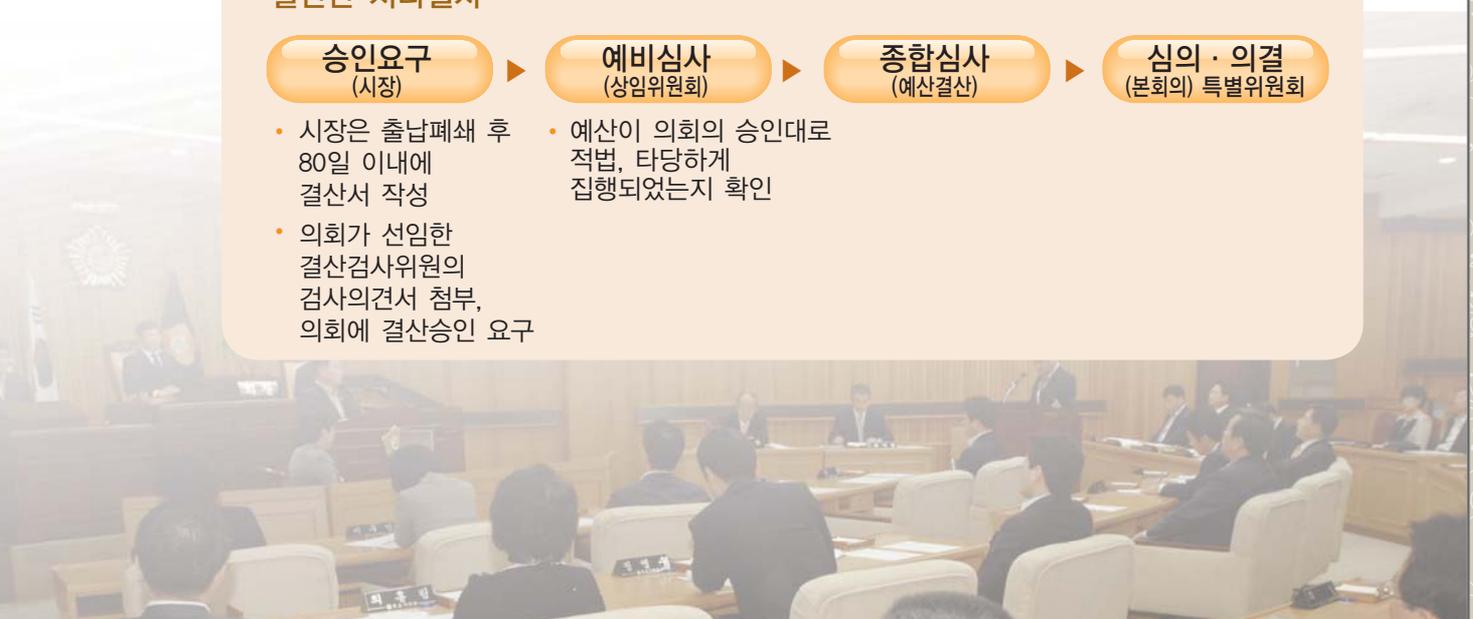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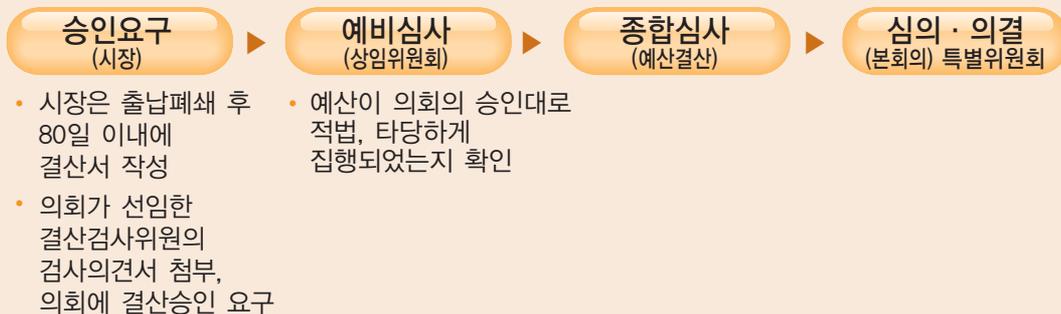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안 승인

예산안이란 한 해 동안의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예산은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확정하며, 결산은 시장이 예산을 집행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예산안 처리절차



결산안 처리절차



조례제정 및 개폐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라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고,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가 있다. 시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조례제정 및 개·폐절차

발의(제출)

- 시장
- 재적의원 1/5이상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구청장에게 이송

공포

- 20일 이내 구청장이 공포

청원의 심사·처리

청원은 시민이 시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시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며 의회는 청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자치단체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

자율권

자율권이란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의회의 자율권은 회의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질서유지권, 의회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내부조직권 등이 있다.



●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권



의회는 집행부의 사무를 감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선거권



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 선거권 중에는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임권으로 구분된다.

● 청원수리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 의견표명권



지방의회는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본회의나 위원회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회의가 휴회·폐회중이라도 행정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서면질문 제도를 두고 있다.



의회 운영

● 집회 및 회기

-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이루어지며, 회의 일수 및 정례회의 집회일은 조례로 정한다. 목포시의회의 경우 총 회의 일수는 90일 이내이며, 본회의 의결 후 30일 이내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 정례회

- 회의운영 : 연 2회
 - 제1차 정례회 : 매년 7월중(20일 이내)
 - 제2차 정례회 : 매년 11월중(35일 이내)
- 주요내용
 - 제1차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입세출 결산안의 승인, 기타 부의안건
 - 제2차 정례회 : 다음연도 예산안의 심의·의결, 기타 부의안건

● 임시회

- 회의운영 : 수시
 - 시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요구시
 - 한 회기당 15일 이내
- 주요내용
 - 추경예산안 심의, 부의안건 심의, 시정질문 등

●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 본회의
 - 본회의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다.
 -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상임위원회
 - 본회의에서의 의안 심의에 앞서 예비적으로 심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회부된 소관사항의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심의에 판단자료를 제공한다.

● 회의의 방청

- 회의의 방청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방청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의회사무국에서 발행한 방청권을 소지하면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별 의원 현황 및 소관

의회운영위원회(9명)

- 위 원 장 : 조성오
- 부위원장 : 이방수
- 위 원 : 이구인, 정영수, 고경석, 최홍림, 백동규, 전경선, 서미화
- 소관사항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 의회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계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기획복지위원회(7명)

- 위 원 장 : 성혜리
- 부위원장 : 서미화
- 위 원 : 여인두, 오승원, 이구인, 김영수, 전경선
- 소관사항
 - 감사담당관, 기획관리국, 행정복지국, 보건소, 동 소관에 관한사항



관광경제위원회(7명)

- 위 원 장 : 노경윤
- 부위원장 : 백동규
- 위 원 : 최기동, 최홍림, 박창수, 이방수, 강 신
- 소관사항
 - 관광경제국, 교육문화사업단, 생활환경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한사항



도시건설위원회(7명)

- 위 원 장 : 최 일
- 부위원장 : 정영수
- 위 원 : 조성오, 강찬배, 고경석, 허정민, 조요한
- 소관사항
 -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에 관한사항



의원 명단



의 장

부의장



성명 **배종범**

성명 **허정민**

지역 산정, 대성, 죽교, 북항동

지역 이로, 하당동

e-mail bjb8785@naver.com

e-mail gjals3@hanmail.net

상임위원장 · 부위원장 명단



의회운영위원장

성명 **조 성 오**

지역 연산, 원산동

e-mail mokpo365@naver.com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성명 **이 방 수**

지역 비례대표

e-mail sanha07@hanmail.net



기획복지위원장

성명 **성 헤 리**

지역 신흥, 부흥동

e-mail hyeri0228@hanmail.net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성명 **서 미 화**

지역 비례대표

e-mail hanna2248@hanmail.net



관광경제위원장

성명 **노 경 운**

지역 삼향, 옥암동

e-mail thoma@korea.com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성명 **백 동 규**

지역 신흥, 부흥동

e-mail bdk2991@naver.com



도시건설위원장

성명 **최 일**

지역 산정, 대성, 죽교, 북향동

e-mail choiil709@hanmail.net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성명 **정 영 수**

지역 목원, 동명, 만호, 유달동

e-mail dj0408@hanmail.net

의원 명단



기획복지위원회

성명 **여인두**

지역 연산, 원산동

e-mail dudlsen@hanmail.net



기획복지위원회

성명 **오승원**

지역 용해, 상동

e-mail osw0010@hanmail.net



기획복지위원회

성명 **이구인**

지역 용해, 상동

e-mail 29ine@naver.com



기획복지위원회

성명 **김영수**

지역 목원, 동명, 만호, 유달동

e-mail jdco03@yahoo.co.kr



관광경제위원회

성명 **최기동**

지역 목원, 동명, 만호, 유달동

e-mail ckd324@naver.com



도시건설위원회

성명 **강찬배**

지역 용당1, 용당2, 연동, 삼학동

e-mail kcb52@nate.com



관광경제위원회

성명 **고경석**

지역 용당1, 용당2, 연동, 삼학동

e-mail bnr8881@hanmail.net



관광경제위원회

성명 **최홍림**

지역 용당1, 용당2, 연동, 삼학동

e-mail mokpvictory@hanmail.net



관광경제위원회

성명 **박 창 수**

지역 이로, 하당동

e-mail wellbing1030@hanmail.net



도시건설위원회

성명 **조 요 한**

지역 삼향, 옥암, 부주동

e-mail econodigm@hanmail.net



기획복지위원회

성명 **전 경 선**

지역 부흥, 신흥동

e-mail jks5308@hanmail.net



관광경제위원회

성명 **강 신**

지역 비례대표

e-mail mokpokhan@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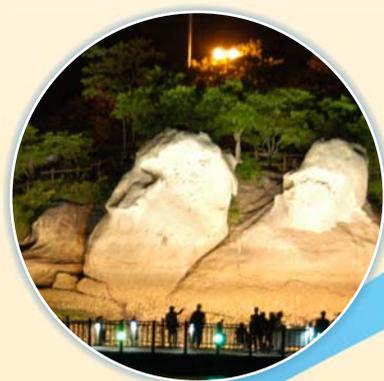




활기찬 경제, 따뜻한 행정

시정현황

- | 목포시 연혁
- | 목포시 상징
- | 목포시 기본 현황



목포시 연혁

- ▶ 1397년(태조 6년) : 목포진 설치
 - ▶ 1439년(세종21년) : 목포에 있는 수군처치영을 해남 문내면으로 옮기고 목포만호진 설치
 - ▶ 1502년(연산 8년) : 목포진성 축성
 - ▶ 1647년(인조25년) : 고하진을 땅고지로 옮긴 후에 당관창 됨
 - ▶ 1897년 10월 01일(광무1년) : 목포항 개항
-
- ▶ 1910년 10월 01일 : 무안부를 목포부로 개칭하고 19면을 관할
 - ▶ 1914년 01월 11일 : 호남선 철도 개통
 - ▶ 1914년 04월 01일 : 무안군 부내면만 목포부로 편입
 - ▶ 1932년 10월 01일 : 무안군 이로면, 죽교리, 산정리, 용당리 등을 목포로 편입
 - ▶ 1948년 04월 01일 : 정(町)을 동(洞)으로 개칭
 - ▶ 1949년 08월 15일 : 목포부를 목포시로 개칭
 - ▶ 1963년 01월 01일 : 무안군 상리, 용당리, 달리, 울도 등을 목포시로 편입
 - ▶ 1987년 01월 01일 : 무안군 삼향면 옥암리, 대양리 등을 목포시로 편입
 - ▶ 1994년 07월 06일 : 이로동을 용해·상동으로 분동
 - ▶ 1997년 01월 01일 : 행정동 분합(29개동 → 26개동)
 - ▶ 1998년 10월 05일 :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 ▶ 1999년 09월 13일 : 신도심2단계 매립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면적 증가(46.02km²→46.91km²)
-
- ▶ 2000년 03월 20일 : 동사무소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운영(26개동)
 - ▶ 2001년 10월 18일 : 북항동 신안비치아파트 뒤편 공유수면 매립으로 면적증가(46.91km²→47.08km²)
 - ▶ 2002년 03월 10일 : 소삼학도 호안축조공사
 - ▶ 2004년 04월 01일 : 고속열차(KTX) 개통(1일 8회 운행)
 - ▶ 2006년 08월 07일 : 행정동 합병 축소(26개동⇒22개동)
 - ▶ 2012년 01월 25일 : 부주동 신설(22개동⇒23개동)

목포시 상징

시 기



세 개의 깃발

- 출렁이는 파도의 모습을 깃발의 역동성으로 단순 표현하여 이미지업 시킴
- 깃발을 세 개로 표현한 것은 동양적 삼재(天·地·人)사상과 완전수 개념을 근간으로 육해공 최대의 발전 가능성을 함축하였으며, 더 나아가 세계를 향한 관문도시 목포를 의미함

중앙의 유달산

- 목포를 사랑하는 대표 이미지로 유달산을 상징적으로 표현함
- 시민의 정서적 공감대를 모아 목포시의 화합과 발전으로 형성하며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

하단의 배

- 세계를 누비는 배의 형태로 표현되어 개항 백년의 역사, 동북의 물류 터미널, 다도해 관광 전진기지, 남도행정의 요람, 서남해안의 중심도시로서 지역화합을 염원함
- 전진하는 배의 모습이 곡선으로 처리되어 조형적인 안정감을 부여함

마스코트



- 청정도시 목포의 물 이미지를 목포시의 새로운 심볼과 결합한 밀레니엄베이비 마스코트임
- '포포와 포미'는 목포시의 지명과 항구를 지칭하는 '포' (浦, Port)와 아름다움 '미' (美)를 사용함으로써 귀엽고 발랄한 느낌을 부여한 이름임

시화



시화 : 백목련

- 목련과의 교목으로 그 품격이 고매하고, 우아하며 같은 ‘목’ 자를 돌림의 상통성을 갖는다.
- 초봄 일찍이 흰 봉오리의 꽃을 잎 먼저 피어 올려서 그의 순결을 자랑하여 문화 예술의 깊은 뜻과 순진한 목포인을 상징한다.

시목



시목 : 비파

- 장미과의 상록수로 목포지역에서 유일하게 재배되고 있음
 - 꽃 : 추운 겨울에 고통을 이겨내고 꽃망울을 터트리는 특이한 생리는 인내와 끈기가 있는 목포인의 기질이며,
 - 열매 : 부귀와 부번을 상징
 - 잎줄기 : 우아한 품위를 상징

시화



시조 : 학

- 삼학도 전설에 등장하는 장수·복록의 길조로 순고한 선비의 자태같은 품위와 멋과 낭만의 예술인 기질을 간직하고 있다.

목포시 기본현황

● 기본현황

- 면 적 : 50.08km²(전남의 0.4%)
- 인 구 : 247,442명(인구밀도 km²당 4,940.9명)
- 면 적 : 50.08km²(전남의 0.4%)
- 인 구 : 247,442명(인구밀도 km²당 4,940.9명)
- 산업단지 : 2개소 742,000m²(입주업체 109개)
 - ▶ 삼진산단 212,000m²(입주업체 35개)
 - ▶ 산정농공단지 530,000m²(입주업체 74개)
- 주택 보급률 : 96.7% (94,978호)
- 상수도 보급률 : 99.7%(1일 급수량 97.475m³, 톤, 1인당 급수량 385ℓ)
- 하수도 보급률 : 96.83%

● 재정규모

- 총규모 : 5,624억원 (일반회계 4,561, 특별회계 1,063)
- 시민 1인당 담세액 : 343천원(1인당 재정수혜액 : 2,295천원)



• 행정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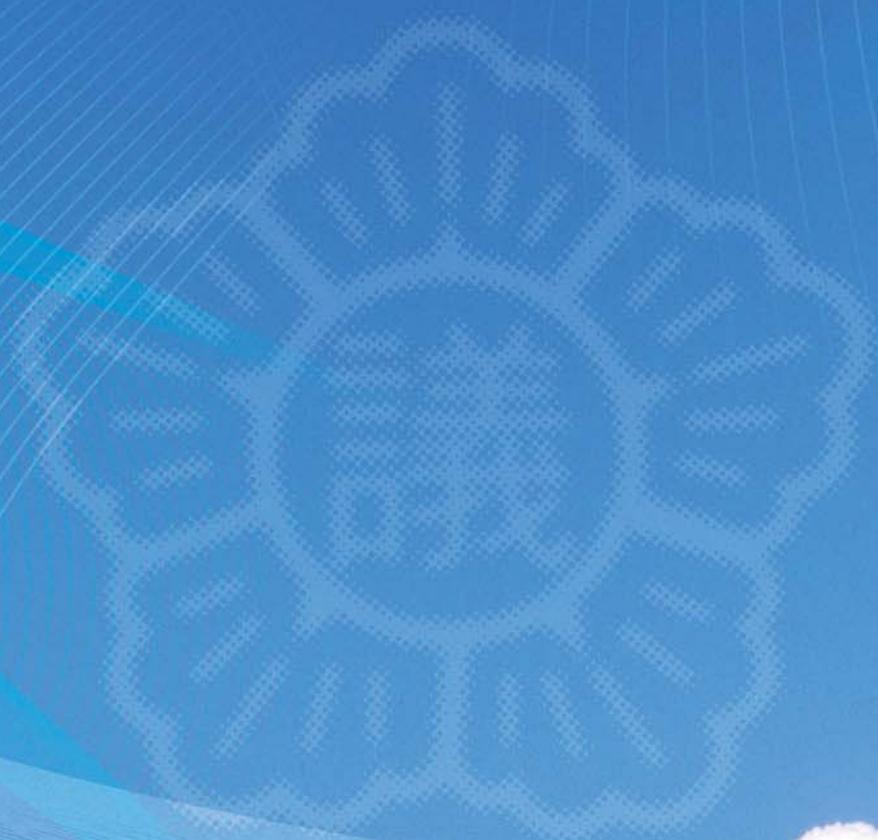
행정동	법정동	자연부락	통	반
23	44	38	560	2,432

• 행정조직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국	실	과	담당	소	과·지소	단	과	소	
9	1	38	173	1	2	3	13	2	23

• 의회조직 

의원	운영위원	상임위원회	사무국	전문위원 수	담당
22	1	3	1	4	2



목포시의회

목포시 용당동 1188-2(양율로 203)
전화 279-8227 / 팩스 279-8225